对任对另至吃到这些好到

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 (조용진 의원 외 14명)

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

(조용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1 발의연월일: 2024. 2.16.

발 의 자:조용진·정한석·윤종호

권광택 · 윤승오 · 임병하

임기진 · 차주식 · 최덕규

최병근 · 허 복 · 배진석

손희권 · 박채아 · 황두영
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, 이해 부족으로 교육 현장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비(非) 특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
- 교육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본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특수교육 진흥에 대하여 교육감,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마.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, 개별화교육, 인권보호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9조)

- 바.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·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- 사.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, 교육감의 학교 특수교육 업무 지도·감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~제12조)
- 3. 조례안: 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5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법제심사(예산입법담당관 법제지원팀): 검토완료 §예산입법담당관-138(2024. 2. 1.)
- 나. 규제심사(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): 규제사무 없음 §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-3614(2024, 2, 16,)
- 다. 부패영향평가(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): 부패유발요인 없음 §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-3614(2024. 2. 16.)
- 라. 성별영향평가(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): 이상 없음 §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-3614(2024. 2. 16.)
- 마. 해당부서 의견(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): 의견 없음 《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-3614(2024. 2. 16.)
- 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

6. 발의의원 서명부: 붙임

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·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2. "특수교육"이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- 3. "특수교육대상자"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4. "특수교육교원"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.
- 5. "특수교육기관"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.
- 6. "특수교육지원기관"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법 제5조제4호, 제5호, 제8호, 제9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연구·연수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경상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특수교육대

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·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각 교육장과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,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. 또한, 특수교육대상자 중 두 가지 이상 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
 - 2.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
 - 3.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
 - 4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
 - 5.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 - 6.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
 - 7.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인력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
 - 8.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
 - 9.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부모, 관계 기관 및 단체,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 등)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·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 를 조사하고,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(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·교육)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, 일반학교의 특수학급,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·능력,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(개별화교육 지원)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9조(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)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 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 인권지원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10조(진로·직업교육 체계 구축) 교육감은 개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·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진로·직업 체험처 발굴·지원, 관련 기관과의 연계·협력 등 진로·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교원의 자질향상)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·감독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특수 교육 업무를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.
- 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4조(포상)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 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 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 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・등록・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- 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 - 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 - 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 - 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 - 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 - 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7. 과학 ·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 - 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 ·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 - 9. 학교체육 ·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
- 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- 11. 교육・학예의 시설・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- 12.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
- 13. 특별부과금 ·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- 14. 기채(起債) ·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- 15.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한 사항
- 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특수교육"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특수교육 관련서비스"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·가족지원·치료지원·지원인력배치·보조공학기기지원·학습 보조기기지원·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.
- 3. "특수교육대상자"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- 4. "특수교육교원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- 5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6. "통합교육"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·장애정 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.
- 7. "개별화교육"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

- ·교육내용·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8. "순회교육"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, 가정 또는 복지시설(장애인복지시설, 아동복지 시설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9. "진로 및 직업교육"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· 자 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특수교육기관"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(전공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.
- 11. "특수학급"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 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.
- 12. "각급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·평 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.
 - 1. 시각장애
 - 2. 청각장애
 - 3. 지적장애
 - 4. 지체장애
 - 5. 정서ㆍ행동장애
 - 6.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
 - 7. 의사소통장애
 - 8. 학습장애
 - 9. 건강장애
 - 10. 발달지체
 - 11.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장애

-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·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·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,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·군·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.
- 제17조(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)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.
 - 1. 일반학교의 일반학급
 - 2. 일반학교의 특수학급
 - 3. 특수학교
 -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·능력·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·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·도 교육감 (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유치원 과정의 경우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 2. 초등학교·중학교 과정의 경우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

설치한다.

- 3.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,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.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| 제3조 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「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| 제3조 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된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향후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된 비용 발생과 관련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- 3. 작성자: 교육복지과 장학사 박수민(054-805-3272)